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2명 이상 자녀 양육시 건강보험료 경감	3

I. 개요

1.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19.
- (3) 회 부 일 : 2024. 6.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두 명 이상 자녀 양육시 건강보험료 경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u>

	<u>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 육하는 사람</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동법 시행령²⁾ 및 시행규칙³⁾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상자를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각 대상자별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 비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7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고시)」를 두어 따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고시에서는 세월호 피해 주민 (경감대상 보험료: 2014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 개성공단 근로자·사용자 (경감대상 보험료: 2016년 2월분부터 7월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경감대상 보험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경감대상 보험료: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등을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입자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유인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다만,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는바,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주로 경제적·지역적 취약 계층 등에 한정되는데, 저출산 문제해결 등 국가적 정책목표를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보건복지부 의견

-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시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도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우려가 있는바,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경감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행 보험료 경감은 섬·벽지 거주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중인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받을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